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자격) ① 본교에서 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참가자격에 부합되는 자라야 한다.

② 본교 재무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개시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내용 및 그 형식에 따른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서식) 1통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통
4. 위임장(대리인 참가시) 1통
5. 사업자등록증명원 1통
6. 수입업협회회원증사본(외자) 1통
7. 대리점 계약서 사본(외자) 1통
8. Maker’s Certificate(공급자증명서) 1통
9.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총액의 5%이상,1개월) 1통
10.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4조 (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필요한 사양서(규격서) 및 당해 특수조건 등이 필요한 경우 복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찰설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본교가 주관하는 입찰설명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후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낙찰자가 소정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7조 (입찰) ① 입찰참가자는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사전에 정확히 작성하여 날인후 입찰보증금과 함께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을 말소하거나 또는 정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는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구분하여 본교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되,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철회·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⑥ 입찰참가 인원은 1개 회사에서 해당물품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 혹은 위임받은 대리인외 1인 계 2인 이하로 한다.

⑦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⑧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의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따른다.

제8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사용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된다.)
5.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시 그 형식에 위배된 입찰
9.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

제9조 (가격입찰 실격처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을 실격처리한다.

1. 본교가 제시한 규격에 미달하는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가격입찰
2.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적격입찰 판정이 불가능한 규격입찰자의 가격 입찰
3. 규격입찰서 기재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첨부한 카다로그, 도면 등의 내용과 상호 불일치한 규격입찰자의 가격입찰

제10조 (낙찰자의 결정 및 발표) ① 개찰은 입찰서 접수완료 후 4일 이내로 한다.

②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입찰자격과 입찰서 기재사항을 심사하여,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유효입찰자중 본교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내자·외자의 입찰경쟁시 가격비교는 외자 Offer가격(입찰전일 전신환매도율 적용)에 본교에서 산정하는 본교 도착시까지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상위규격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자로, 규격입찰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가장 많은자로, 입찰보증금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내자·외자의 입찰경쟁시 입찰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내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품질 등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⑥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매부서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1조 (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견품의 멸실·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본교의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물건의 품질·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하거나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는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4. 관계직원이나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7. 자격,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8. 본교 물품공급 계약이행에 있어서 지체상금 납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제13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본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4조 (기타사항) 입찰에 관하여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